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49	박성훈의원	2024. 7. 15.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1	김태년의원	2024. 8. 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63	김선민의원	2024. 8. 5.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72	남인순의원	2024. 8. 16.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98	한지아의원	2024. 8. 16.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43	전진숙의원	2024. 10. 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 접회부(2024.1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37	김준혁의원	2024. 10. 3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 접회부(2024.1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41	송언석의원	2024. 10. 3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 접회부(2024.1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49	최은석의원	2024. 10. 3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 접회부(2024.1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23	조은희의원	2024. 11. 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 접회부(2024.1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15	김민전의원	2025. 7. 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85	송재봉의원	2025. 7. 28.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 9. 22.)에서 위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
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25.)에서 경제재
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을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4. 부대의견

- 가.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의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나.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의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 다. 정부는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을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③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5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을 “제16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발전과 유통질서 확립</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정의) ----- -----. 1. ----- <u>연초(煙草)나 니코틴</u> ----- ----- ----- ----- ----- ----- ----- ----- -----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 ② (생략) <신설>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30조(몰수와 추정) ① 제27조 ·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과</u> 담배는 몰수한다. ②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u>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u>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0조(몰수와 추정) ① ----- ----- ----- <u>연초, 니코틴 및</u> ----- -----. ② (현행과 같음)
--	---